

예 산 총 칙

2021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84,973,013	23,549,190
일반회계	701,278,866	21,038,366
특별회계	83,694,147	2,510,824
기타특별회계	83,694,147	2,510,824
동남권 방사선 의·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	34,171,547	1,025,146
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	4,626,357	138,791
의료급여기금	580,924	17,428
지하수관리	1,282,315	38,469
폐기물처리시설	6,513,092	195,393
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	1,001,106	30,033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11,197,132	335,914
원자력발전지역개발	20,479,879	614,396
주차장	3,841,795	115,254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·세출예산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,294,238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의존재원(국·시비보조금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)과 상급기관 공문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